

일본의 직업능력 중점 정책 및 구직자 지원제도(제2안전망)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 · 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I. 머리말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은 기업의 자주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그 연장선에 있지만, 1999년 교육훈련급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 가운데 기업은 인건비 삭감, 고용 조정의 용이함 등을 추구하면서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늘려왔는데, 그들에 대한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낮은 직업능력이 비정규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고, 2003년부터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청년층 자립/도전전략회의’를 발족시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낮은 직업능력이 비정규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저해된다고 판단, 2003년부터 법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자립/도전전략회의’를 발족시켜 적극적으로 지원

2008년에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였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제1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임시 지원책으로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 비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생활비 제공을 골자로 했다. 그 후 2011년 10월부터 동 사업은 구직자 지원제도로 명칭이 바뀌었고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되었다. 일본 직업능력정책의 대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직업능력 중점 정책을 2012년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구직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직업능력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정책을 내실화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직업능력 중점 정책¹⁾

일본의 2012년도 직업능력 중점 정책은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성장 및 제조업 분야 인재 육성 추진으로서 예산액은 1,590억 엔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개호(간병·요양)/복지, 의료, 자녀양육, 정보통신 등 성장 분야에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실용적인 공공직업훈련 및 구직자 지원 훈련을 추진함과 동시에 훈련수료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분야 등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사업주 등에 위탁하여 직장에서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부여하는 직업훈련(성장 분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업주 단체, 대학 등의 고등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② 제조업 분야 인재 육성의 추진으로서, 일본의 기간산업이자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분야에 지역이나 산업의 니즈를 감안하여 최첨단 기술혁신에 대응한 훈련을 실시하여 제조업 분야의 인재육성을 추진한다.

일본의 2012년도 직업능력 중점 정책은 성장 및 제조업 분야 인재 육성,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 평가시스템 정비, 직업생애를 통한 커리어 형성 지원, 청년층 취업 촉진과 자립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협력 등 7가지

둘째,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추진으로 2012년도 예산액은 993억 엔이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이직자에 대한 공공직업훈련(위탁훈련 등)의 추진이다. 이직자에 대해 성장 분야 등 공공직업훈련을 적확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② 구직자 지원제도에 근거한 직업훈련이나 급부금 지급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이다. 동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③ 잡카드 제도의 추진이다. 비정규직 등 커리어 향상에 유효한 도구인 잡카드 대상을 공적훈련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매칭 시 잡카드의 활용 촉진, 잡카드 보급 서포터 기업 개척 등으로 잡카드의 취득 촉진을 꾀한다.

셋째, 직업능력 평가시스템의 정비인데, 18억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먼저, ① 기능검정제도의 정비로서 사회적인 니즈를 감안한 ‘기능검정’ 직종의 통폐합 추진, 민간기관의 활력 활용 촉진, 산업기술 고도화 등에 대응한 검정기준의 재검토

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stf/shingi/2r985200000277c1.html>.)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를 실시한다. ② 직업능력평가기준의 정비 및 활용 촉진으로서, 직종별로 필요한 능력요건을 명확히 한 ‘직업능력평가기준’을 책정하고, 이미 책정된 ‘직업능력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인재 육성 및 평가를 위한 도구(커리어맵, 직업능력평가시트)의 개발·도입을 촉진하면서, 사내검정이나 업계검정으로 연계하여 능력평가시스템의 개발·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직업생애를 통한 커리어 형성 지원 촉진으로서, 123억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노동자·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인데, 사업주가 노동자의 커리어 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경우 ‘커리어 형성촉진 조성금’을 통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커리어 형성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리어 형성 지원과제의 명확화, 전문적인 조언, 정보제공, 강습 실시, 그리고 우수사례 표창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개한다. ② 잡카드 대상자를 중소기업 등 재직근로자나 대학생 등으로 확대한다. ③ 커리어 상담 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커리어 상담원의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원에 대한 정보제공체제를 정비하여 커리어 상담 활용을 촉진한다. ④ 교육행정과 연계하여 커리어 상담 수법을 활용,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커리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청년층 서포터 스테이션 사업’의 설치 거점을 확충하고, 방문지원을 통해 청년층이 지원 창구에 오도록 유도하여, 니트 등의 청년층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

다섯째, 청년층 취업 촉진과 자립 지원 대책으로서, ‘지역 청년층 서포터 스테이션 사업’의 설치거점을 현재 110개소에서 115개소로 확충하고, 방문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이 지원창구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니트 등의 청년층에 대한 직업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약 20억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여섯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의 추진으로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이나 니즈에 맞는 훈련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취업경험이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듀얼 시스템’을 통하여 훈련 개시 전 준비부터 수료 후의 취직지원까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패키지 지원을 하는 ‘장애인 직업훈련 코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위탁훈련의 충실을 기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으로 55억 엔이 책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협력의 추진인데, 외국인 산업실습생 제도의 적절한 운용, 기능평가 시스템의 이전 등 기업능력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억 4천만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Ⅲ. 구직자 지원제도(제2안전망)²⁾

일본은 오랫동안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낮거나 자산이 적을 것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³⁾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제1안전망)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종료된 경우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이을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였는데, 그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도 다수 발생하였다.

자민당 정권 시절, 이들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지원제도(당시의 명칭은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시적이었다. 2009년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동 제도를 항구적인 제도로 바꾸는 법(직업훈련 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1년 5월 13일 제정하여 2011년 10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에 대해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 및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해 구직자가 일정 요건을 채우면 훈련기간 중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부금을 지급하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 정권 시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구직자 지원제도를 항구적인 제도로 바꾸는 법을 2011년 5월 제정하고 10월부터 실시함

2) 구직자 지원제도는 2012년 6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 겸 HRD 연구센터 주최)에서 필자가 발표한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와 실태-2000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에서 일부 발췌·가필·수정한 것이다.

3) 후생노동성의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에 따르면, 생활보호 수급세대는 1993년 58만 6천 세대에서 그 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 149만 8천 세대로 그간 약 2.6배 증가하였다.

며, 공공직업안정소(우리나라의 고용센터)가 중심이 되어 상세한 취업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에 대해 훈련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기간 중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부금을 지급하며, 고용센터가 중심이 되어 취업을 지원

동 제도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수급 종료자,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이직자, 학졸 미취업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의 구직자인데, 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 신청을 하고, 동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안정소 소장이 인정한 자이다.

훈련은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기획하는 훈련으로 하고, 취직지원은 고용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훈련실시기관과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일관된 지원을 실시한다.

급부금의 지원요건은 대상자 본인이 훈련기간 중 일정한 수입이 없고, 훈련출석률이 100%인 자이다. 급부금의 수준은 대상자 1인당 10만 엔이며,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급부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자격취득을 위해서 1년이 넘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2년까지 인정한다.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첫째, 본인의 수입이 월 8만 엔 이하, 둘째, 세대 전체의 수입이 월 25만 엔(연 300만 엔) 이하, 셋째, 세대 전체의 금융자산이 300만엔 이하, 넷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이외의 토지·건물을 소유하지 않을 것, 다섯째 출석률 100%이다.

2012년도 동 제도에 의한 직업훈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내용은 기초적 능력만을 습득하는 직업훈련(기초코스)과 기초적 능력에서 실천적 능력까지 일괄하여 습득하는 직업훈련(실천코스)이 있다. 기초코스는 6만 명, 실천코스는 약 24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천코스의 훈련 분야로서는 개호(간병)가 가장 많은 6만 명, 정보계통 3만 6천 명, 의료사무계통 약 1만 7천 명, 그 외 성장 분야인 농업, 환경, 관광 등이다.

취업을 목표는 기초코스 60%, 실천코스 70%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직업안정소는 수강자에 대한 경력 컨설팅을 통하여 적절한 훈련코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직자 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실업자가 안심하고 훈련

을 받고 재취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데,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현재의 구직자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자 지원제도의 전신인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2008년 가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자영업자, 학졸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3년으로 기간을 한정된 사업으로서,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원 7,500억 엔을 기금으로 만들어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실시되었다. 2년간 3,500억 엔이 소요되었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1년 10월부터 영구적인 제도로 이행하면서 남은 기금은 국고에 반납하였다.

구직자 지원제도의 전신인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2008년 가을 세계금융위기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자영업자, 학졸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획

원래 영구적인 제도는 2011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재원 문제로 6개월이 늦추어졌다. 동 제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단기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미수급권자 등이었기 때문에 재원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보다는 정부의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기 때문에 노사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6개월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00억 엔의 기금을 각출하였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일반회계로만 동 제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기까지’는 재원의 1/2을 일반회계⁴⁾, 나머지 1/2을 고용보험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9월부터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의 하나로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영구적인 제도화를 내걸었다. 그 결과 2011년 10월부터 동 사업은 ‘구직자 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영구적인 제도로 바뀌었다. 영구적인 제도화의 과정에서 논점이 되었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⁵⁾

4)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1/2의 55%(즉, 전체 재원의 27.5%)를 지출하고 있다.
5) 일본노동조합 최대전국조직인 령고의 고용법제정책국 인터뷰 조사(2012년 6월 15일) 결과이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준 담당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원조달 문제로서 노사는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1/2씩 조달하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결국 정부의 방침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분간 당초 국고부담액의 1/2의 55%(전체 재원의 27.5%)만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⁶⁾

둘째, 급부금액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약 10%는 실직 시 실업급여가 10만 엔을 밑돌기 때문에 노조 측은 그들에 한하여 실업급여나 구직자 지원제도 중 택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렇게 되었다.

지방의 경우, 훈련장소가 먼 경우가 많아 교통비가 부담이 됨. 훈련을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됨

셋째, 이전의 제도에서 독신자는 10만 엔, 피부양자가 있는 자는 12만 엔을 지원하여 1인당 평균 10.6만 엔이었는데, 이를 모두 10만 엔으로 통일하였다. 그것은 훈련교통비를 염출하기 위해서였다. 지방의 경우, 훈련장소가 먼 경우가 많아 교통비가 부담이 되었다. 확실하게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0만 엔으로 통일하고, 남은 재원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넷째, 급부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100%로 하였다. 출석만 하고 바로 퇴실하는 자가 있어 확실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한정이 없었던 급부금 수급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즉 이전에는 신제도에서 65세 이상은 대상 외로 하였는데 그것은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이다. 신제도는 훈련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구직 가능성이 낮은 65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⁷⁾

여섯째, 부정 수급 문제의 해소이다. 동 제도에 근거하여 새롭게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정원 규모와 훈련기간에 따라 100~300만 엔의 신규훈련 설정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부정 수급의 문제가 나타나 신제도에서는 폐지하였

6) 실제적으로는 구제도에서 남은 기금이 있는데, 그것으로 원래 국고부담액인 1/2을 충당하고 있다.

7) 구제도하에서 65세 이상인 자가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구직으로 연결되지 않은 훈련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다.⁸⁾ 또한, 훈련생의 부정수급 문제도 있어 이전 제도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신제도에서는 부정수급액의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

일급제, 훈련수탁기관에 대한 조성금으로 구제도에서는 1개월(28일) 훈련생 1인당 ‘기본장려금’으로서 6만 엔(또는 10만 엔)을 지원하였으나, 신제도에서는 ‘기본장려금’에 덧붙여 수강자의 취업률과 연동하여 인센티브로서 훈련생 1인당 ‘부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본장려금은 기초코스가 6만 엔, 실천코스가 5만 엔이고, 부가장려금은 취업률¹⁰⁾에 따라 취업률 55% 이상 2만 엔, 40~55% 미만 1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훈련수탁기관에 대한 조성금으로 신제도에서는 ‘기본장려금’에 덧붙여 수강자의 취업률과 연동하여 인센티브로서 훈련생 1인당 ‘부가장려금’을 지원

표 1.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과 구직자 지원제도의 비교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	구직자 지원제도
제도·재원		전액 국고부담	고용보험의 부대사업으로 설정, 국고부담의 1/2은 일반회계, 나머지를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거출(단, 국고부담률은 1/2에 55%를 곱한 잠정조치, 실질 27.5%)
급부 요건	연령제한	없음	65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동일세대 동일수급	세대의 주생계자만	세대의 주생계자 요건은 폐지, 단, 동일세대에서 동시에 수급 가능한 자는 1명
	본인수입	연수입 200만 엔 이하	지급대상의 월수입이 8만 엔 이하
	세대*수입	연수입 300만 엔 이하	지급대상의 월수입이 25만 엔 이하
	세대*금융자산	금융자산 800만 엔 이하(2008년 국민생활기초조사 소득 중앙치 448만 엔의 약 2배)	금융자산 300만 엔 이하
	토지·건물 소유	거주용 이외에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좌동
	훈련출석상황	훈련의 출석 일수 8할 이상	전 훈련에 출석할 것(정당한 이유가 있는 결석의 경우는 8할 이상)
	복수훈련수강	과거에 동일내용·동일수준의 공공직업훈련이나 기금훈련을 수강하지 아니한 자(훈련종료부터 1년 경과 후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	기초적 능력 습득을 위한 훈련 수강 후 공공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만 복수 수강 가능

<표 계속>

8) 실제로는 신제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인 2012년 4월에 폐지하였다. 훈련기관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전국적으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한 지역(지사)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동 훈련기관의 나머지 지사의 훈련기관 인증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9) 상기한 출석률 100%로 수급기준이 엄격하게 되는 관계로 구제도가 종료되기 전인 2011년 8~9월에 신청한 자가 약 10만 명이었다고 한다. 훈련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훈련생에게 주지시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0) 훈련실시기관은 훈련 종료 후 3개월간의 취업률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	구직자 지원제도
급부액 · 종류	급부금액	독신자 10만 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12만 엔(가중평균 약 10.6만 엔)	일률 10만 엔
	대부액	독신자 5만 엔 이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8만 엔 이하	현행제도나 타 용자제도와의 균형을 고려(상세한 것은 향후에)
	통소수당(교통비)	없음	신설(평균 1.1만 엔)
	고용보험의 급부액이 급부금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자 급부 등을 수급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는 대상 외	좌동(단, 상세한 것은 조정 중)
기간	급부기간	최대 통산 2년	상한은 원칙 1년(자격 취득을 위하여 1년을 넘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년까지 인정)
	수급 단위 기간	없음	6년을 한 단위로 하고, 그 기간에 1회(기초적 능력 훈련을 수강한 후 공공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는 2회) 수강 가능
적정한 급부를 위한 조치	공공직업안정소의 직업 지원을 거부할 경우	없음	일정기간 급부 정지(상세한 것은 향후에)
	부정수급	급부액의 반환	일정기간 급부를 정지시키고, 수급액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액의 3배 상당액의 반환·납부를 명할 수 있음)
훈련 기관 조성금	수탁훈련기관에 대한 조성금	성과에 관계없이 일률 (6만 엔 또는 10만 엔)	훈련수강자의 취업률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설정
	신규훈련설장장려금	정원 규모와 훈련기간에 따라 지급 (100만 엔부터 300만 엔)	폐지
기금의 취급		2010년도 보정예산에 따라 기금의 기간 연장(2011년 3월 말까지→2011년 9월 말까지)	긴급 인재육성 지원기금의 잔고는 구직자 지원제도에 총당

주: *세대: 본인 및 동거 부모, 자녀, 배우자(일시적으로 별거 중이라도 생계유지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자료: 령고제공자료(2012년 6월 15일).

2009년 7월에서 2010년 6월까지 구제도에서의 실적을 보면, 훈련과정은 5,848개, 훈련수강자 수는 10만 3,762명이었다. 2010년 1월까지 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해 수료후 3개월 후의 취업률은 59.3%였다. 생활지원급부를 수령한 자는 7만 6,502명이고, 생활자금을 용자 받은 자는 9,741명이었다(령고, 2010).

또한, 2011년도 실적을 보면, 구직자 지원훈련 수강자는 약 5만 명이었는데, 그 중 2012년 1월 말까지 훈련을 종료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종료 후 3개월 후의 취직

상황을 보면, 기초코스의 취업률은 69.7%, 실천코스의 취업률은 71.8%인 것으로 나타났다.¹¹⁾

IV. 맺는말

본고에서는 2012년 예산을 중심으로 일본의 직업능력 중점 정책을 살펴본 후 2011년 10월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 후 운용되기 시작한 구직자 지원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일본의 직업능력 중점 정책은 7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개호/복지, 의료, 자녀양육, 정보통신 등의 성장 분야,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환경/에너지 분야,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일본의 제조업 분야에 직업능력지원정책의 중점이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액은 적지만, 커리어 형성 지원도 중요한 정책으로서 재직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에게도 잡카드를 보급하여 지속적인 커리어 형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직업능력지원 정책은 개호(간병·요양)/복지, 의료, 자녀양육, 정보통신 등의 성장분야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환경/에너지 분야,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구직자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비보험자인 자에게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직업능력개발정책이다.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영구화된 후의 훈련종료자가 적고, 또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인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자는 더욱 적기 때문에 시기상조이나 2012년 6월 현재까지 집계한 결과를 보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예산액이 많은 분야는 개호/복지, 의료, 자녀양육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의 영향이 강하고, 또한 비정규직에 관련된 직업능력정책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및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업능력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입안·실시되길 기대해 본다. 

1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2e2io.html>) 기초코스는 74코스로서 훈련종료자는 717명(훈련기간 또는 종료 후 공공직업훈련으로 전환한 자 27명은 제외), 그중 취직한 자는 500명이었다. 실천코스는 169코스로 훈련종료자는 1,891명, 그 중 취직한 자는 1,358명이었다.

참고문헌

- 랭고(2010). 구직자지원제도(가칭) 창설을 향한 랭고의 당면 대응에 관하여.
- 타카하시 켄지(2011). 일본의 구직자지원제도의 방향성과 직업훈련수강급 부금제도, 季刊 労働法, No.232.
- 후생노동성(2011). 구직자지원제도 관계 자료(第76回労働政策審議会職業安定分科会雇用保険部会資料).
- _____ (2011). 구직자지원제도에 관하여(안)(第74回労働政策審議会職業安定分科会雇用保険部会資料).
- _____ (2012). 2012년도 직업능력개발국 중점시책과 예산안 개요.